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12. 1(목) 10:00

##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교통건설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60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(안 별표 8)
  - 1)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  - 2)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장 내 옥외광고 관련 장부 미비치 및 등록번호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
  - 3) 상습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, 벽보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의4 및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및 제55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2. 10. 4. ~ 2022. 10. 24.(20일 이상)

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첨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○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(안 별표 8)

- 1)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- 2)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장 내 옥외광고 관련 장부 미비치 및 등록번호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
- 3) 상습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, 벽보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옥외광고물법 )

**제10조의4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)**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·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,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20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 1. 6., 2020. 6. 9.>

1.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
1의2.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·표시한 자

1의3.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2.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
3. 삭제 <2016. 1. 6.>

4. 삭제 <2016. 1. 6.>

5.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

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#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)

**제43조의2(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)**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

2.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

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·표시·설치하는 제3조 각 호(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)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.

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2\*\*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

1.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

2. 재산상 손해의 경우: 사고 1건당 3천만원

**제55조(과태료의 부과)**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